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수송용 수소 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0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운송비 인하를 통한 수소 유통시장 활성화
- ☐ (사업내용) 수소 운송장비 구매 보조금 지원
 - * 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T/T) 200bar, 450bar(20ft), 액화수소 탱크로리(T/L) 등
- ☐ (사업기간) 최소 운영기간(60개월)을 포함한 총 72개월
 - * 협약, 수입/제작, 인도 및 등록 등에 약 12개월 소요
- ☐ (지원근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 ☐ (지원규모) 총 7,050백만원
 - (기체수소 200bar T/T 9대, 450bar(20ft), T/T 2대, 액화수소 T/L 10대)
 - * 운송장비별 모집 및 평가결과에 따라 운송장비별 지원대수 변경 가능
- ☐ (지원한도) 수소 운송장비별 1대당 도입가격의 50% 지원
 - (기체수소 200bar T/T) 최대 115백만원/대(VAT 제외) 지원
 - (기체수소 450bar T/T(20ft)) 최대 210백만원/대(VAT 제외) 지원
 - (액화수소 T/L) 최대 550백만원/대(VAT 제외) 지원
- ☐ (지원대수) 사업자당 최대 5대 지원 가능하며 평가결과 및 공모 신청 사업자 비율,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운송장비별 희망수량이 동 사업의 지원규모에 미달 시 신청사업자의 희망수량을 반영하여 운송장비 추가 지원 예정
-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직접보조사업자
(수소유통전담기관)
(평가 및 선정, 사후관리)

간접보조사업자
(선정된 사업자)
(수소 운송장비 구매 및 운영)

2. 지원대상 및 운영조건 등

□ (지원대상) 수소생산자, 수소유통사, 수소충전사업자, 액화수소 규제 특례 대상사업자 등

○ 기체수소 튜브트레이러(T/T)

- (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허가[특정제조/일반제조/충전]를 받은 업체

- (수소유통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1. 지원 시, 수소생산자·수소유통사·수소충전사업자 중 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도 지원한 분야의 실적만 인정
2.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T/T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해당 T/T가 아닌 추가 T/T 구매 시 동 사업 신청 가능

○ 액화수소 탱크로리(T/L)

-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를 통해 액화수소 탱크로리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

□ (운영조건)

- (최소 운영기간) 고압가스운반자등록 완료 후 최소 60개월 이상 운영
- (용도지정) 최소 운영기간 동안 수송용 수소에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며, 최소 운영기간 종료 후에도 수송용 수소 공급에 우선 사용
- (수소운송장비 운송료) 간접보조사업자는 구매지원 운송장비의 운송료에 대해, 최소 운영기간동안 직접보조사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운송료 인하 효과 검증을 위한 분기별 자료 제출
- (수급안정) 수소 수급 부족 및 불안정 지역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직접보조사업자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
- (수요확보) 수소의 연도별 수요처·공급처 확보 방안 수립

- (안전의무 준수) 수소 운송장비 기반 수소 사업 시, 요구되는 안전 전문가 확보 및 필요 시설 구비, 관련 법규에 따른 차량 정기검사 등 시행, 안전의무 준수 이행 검증을 위한 직접보조사업자의 요청 사항에 적극 협조

○ (권리주체)

구 분	구매계약 ~ 최소 운영기간(60개월)	최소 운영기간 (60개월) 이후
취득·사용·수익·관리권	간접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처분권	산업통상자원부	

- (실적제출) 최소 운영기간(60개월) 동안 수소운송 실적관리 등 운영 현황을 분기별 제출(해당 분기 익월 15일까지)

3. 사업자 선정 및 추진절차



※ 수요조사는 기 시행하였으며, 평가·선정·협약 등의 소요기간은 변동가능

- ① (사업신청) 신청사업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수소유통전담기관에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제출
- ② (선정평가) 신청요건 준수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평가위원회 개최
- ③ (대상자 선정)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④ (협약체결) 선정 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내 전담기관(직접보조사업자)과 협약을 체결해야하며, 평가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함

⑤ (계약 및 도입) 선정사업자는(간접보조사업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 제작사, 수입·판매사(중개사업자)과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경쟁입찰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체결 필요

⑥ (구매비 지원)

○ (선금) 협약 체결 후 간접보조사업자가 신청 시 보조금 지급

* 간접보조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이에 대한 이행(지급)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잔금) 운송장비 인도 후 간접보조사업자가 신청 시 보조금 지급

4. 사업관리

□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의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 반드시 사업등록을 완료하고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 등을 입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협약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직접보조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승인받아야 함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수소 운송장비 구매 관련 계약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선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함.

*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매계약 체결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사전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소유통전담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장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5. 관련규정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6. 지원제외 대상

- ☐ 정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과의 협약·계약과 관련하여 위반·제재 조치 중인 기관·기업 및 대표자
- ☐ 신청 내용이 사업 목적, 특성,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 신청서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 ☐ 부도, 화의, 기업회생절차 중인 경우
-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 기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접수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 회원가입)**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가입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e나라도움
- ② **(온라인 등록)**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www.gosims.go.kr)을 통해 간접보조사업자가 직접 등록
※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공모사업 찾기”를 통해 해당 공모 검색 후 입력
- ③ **(서류제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신청서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 서류 - 고압가스 제조/판매 사업 허가증 사본 -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 액화수소 탱크로리(T/L) 규제특례 확인서 사본	
3	사업자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5	수소 운송장비 구매 및 운영 관련 협약내용	
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모 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일 것)	
7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최근 2개년(2022,2023)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2023년 자료제출 불가 시 사유서 제출 및 2022년으로 대체 가능)	기업만 제출
9	우대사항(중소·중견 및 수소전문기업) 증빙서류	해당 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모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제출 기간 : 2024. 10. 8.(화) 09시~ 2024. 10. 25.(금) 17시까지

* (e나라도움) 접수 시 입력 오류, 콜센터 상담 지연 등이 발생 가능하므로 접수 마감 일
하루 전(~ 10.24) 제출 완료 요망

8. 유의사항

- 신청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제출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 없이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날인/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기관·기업 또는 당사자의 날인/서명이 없는 경
우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제출

- ☐ 수소유통전담기관은 필요시 신청사업자에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귀책사유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이행해야하며, 미이행 시 협약 해지 및 기 지급한 보조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9. 문의처

- ☐ 한국석유관리원(수소유통전담기관) 문의
 - 수소유통관리센터 과장 권호영(☎ 031-789-0233)
 - 수소유통관리센터 사원 김태현(☎ 031-789-0236)
-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등) (☎ 1670-9595)

- [붙임] 1.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작성요령 및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4.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5.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구매 계획서
 6.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분기 운영현황 양식.
 7. 수소 운송장비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끝.

작성 요령

- 1) 공고번호 : 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 2) 접수번호 : e나라도움 접수번호 기재
 - 3) 내역사업명 :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 4) 신청사업자 : 신청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자명 기재
 -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요, 전산상 변경사항 있으면 반영 필요
 -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생년월일은 70.01.01 과 같이 작성)
 - 5) 사업기간 : 사업 수행 시작일부터 최종 종료일까지 기재
 - 6) 사업비 :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금(직접보조사업자)과 자기부담금(간접보조사업자)으로 구분하여 기재
 - 7) 신청사업자 실무담당자
 - 신청사업자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입
- ※ 제출일 및 신청사업자 대표 날인(시스템 업로드 시 해당페이지만 스캔하여 업로드)
- 신청사업자 대표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신청서 제출 시, 본 박스는 삭제

※ 사업계획서 양식 내 목차 준수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신청서

공고번호				접수번호	
내역사업명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신청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형태	☐ 수소생산자 ☐ 수소유통사 ☐ 수소충전사업자 ☐ 규제특례 대상사업자			
	주 소	(-)			
신청사업자 대표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사업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00개월)				
예상사업비 (천원)	희망대수	보조금 (직접보조사업자)	자기부담금 (간접보조사업자)	총 사업비 합계	
보조금 수령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성 명		전 화		
신청사업자 실무담당자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며, 본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치 및 사업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국고보조사업에 참여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2024년 양 일

신청사업자 대표 : (직인)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귀하

※ 정부보조금의 규모는 성률(총 구매비의 50%)로 작성하며, 정액 상한가는 ①기체 200bar T/T는 1.15억원(대당), ②기체 450bar T/T는 2.1억원(대당), ③액화수소 T/L는 5.5억원(대당) 이내로 기재

[붙임2]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되어 사업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3페이지 이내 준수)

☐ 사업목표 및 지원 필요성

-
-

☐ 사업자 안전 역량 및 안전 관리 계획

-
-

☐ 경제성 및 수요처 확보 방안

-
-

☐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
-

☐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방안

-
-

사 업 계 획 서

2024. 00.

신청사업자 상호명

목 차

1. 사업수행 인력 및 실적	00
가. 신청사업자 대표	00
나. 안전 관리 인력	00
다. 사업 수행주체의 사업추진 실적	00
2. 구매지원 필요성	00
가.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가 목적	00
나. 지원의 필요성	00
3. 사업 추진 전략	00
가. 사업자 안전 역량 및 안전 관리 계획	00
나. 경제성 확보 방안	00
다. 수요 확보 방안	00
라.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00
마.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방안	00

1. 사업수행 인력 및 실적(글자크기: 16p, HY헤드라인M, 볼드체)

가. 신청사업자 대표(글자크기: 15p, 휴먼명조, 볼드체)

성명			생년월일	YYYY. MM. DD
소속기관			소속부서	
연락처(휴대전화)	02-000-0000 (010-0000-0000)		이메일	abc@abc.re.kr
사업 경력 (5개 이내)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1990 ~ 2000			

※ 경력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최대 5개 이내)(글자크기: 12p, 중고딕)

나. 안전 관리 인력

번호	성명	직급	정규 여부	생년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사업 담당 분야 ²⁾	주요 자격
						학교	취득 연도		
1	홍길동	책임	정규직	610101	남	○○대	1900	안전 관리자	-
2									
3									
...									

- 1) 주요 자격관련 증빙 제출 필요
- 2) 재직증명서, 공고일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4대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 소속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요
- 3)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안전관리 역무담당임을 알 수 있는 서류 혹은 해당 인원이 안전관리자임을 확약하는 공문(날인 포함) 등 제출 필요
- 4) 안전관리자 등 본 사업의 전문가 보유 수준 평가를 위해 관련 인력 필수기입

다. 사업 수행주체의 사업추진 실적

(1) 수행기관의 주요 사업추진실적(공동구매사업 제외) (글자크기: 15p, 휴먼명조)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납품물량 (톤)	비 고

- 1) 최근 3개년 수송용 수소 공급사업(수소공급계약) 실적
- 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소 공동구매사업 참여 실적

2021~2024년 공동구매 참여 실적					
사업 시기	낙찰 여부	유찰 여부	참여 권역	참가 물량(kg)	입찰 금액(부가세 포함)가중평균
2021년 1차					
2021년 2차					
2022년					
2023년					
2024년					

2. 구매지원 사업 필요성

가.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사업 참가 목적

ex) 사업 참가 이유 및 목적

ex) 지원 사업자가 이해한 본 사업의 취지 및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ex) 정부의 정책 목표와 사업자의 참가 이유의 부합성

나. 지원의 필요성

ex) 자체 운송장비 조달의 한계점

ex)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사업 여부에 따른 사업 추진 상의 차이점

3. 사업 추진 전략

가. 사업자 안전 역량 및 안전 관리 계획

(1) 안전 관리 인력

ex) 사업자 소속의 정규직 인력 중 사업 안전 관리하는 인력의 수, 전문성, 경험

(2) 적정 시설 보유 여부

ex) 수소 T/T(T/L) 사업 운영 및 안전관리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는 적정 시설의 보유 현황

(3) 안전관리 계획

ex) 수소 T/T(T/L) 사업 운영에 있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시설 · 인력 등의 사항

(4) 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ex) 수소 T/T(T/L) 사업 운영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 상황
사고 방지를 위해 사업체 내에서 시행중인 사항
사고 상황별 대처 방안 및 계획

(5) 운영안전 매뉴얼 보유 현황

ex) 수소 T/T(T/L) 관련 자체적으로 제작 및 보유한 운영안전 매뉴얼 등

나. 경제성 확보 방안

(1) 운송료 인하 계획

구 분	기 존 금 액(원/kg)	구 매 지 원 사 업 시, 예 상 금 액(원/kg)	예 상 인 하 금 액(원/kg)
운 송 료			

ex) 기존 수소 운송장비 운송료 및 산정 내역

수소 운송장비 운송료는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산정하여 제출 필요

수소 운송장비 운송료(원/kg) = 운송장비의 감가상각비 + 유지보수비 + 운송비(출하센터↔충전소)

ex) 구매지원 사업을 통한 예상 운송료 및 산정 내역

ex) 구매지원 사업 외 운송료 인하 방안

※ 기존 운송장비 운송료 감증을 위한 증빙 제출 필요

※ 구매 지원 사업 이후의 운송장비 운송료를 감증을 위해, 협약 체결 후 수소 구매/공급 계약서(수소생산자·충전사업자) 또는 위탁운송계약서(유통사) 제출 요구 가능

(2) 효율적인 수소 운송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ex) 사업자와 연계된 수소 생산 · 운송 · 충전소

타 수소 생산 · 운송 · 충전소 사업자와의 협력 방안 및 계획

다. 수요 · 공급 확보 방안

(1) 수요 확보 방안(수소생산자·유통사 등)

ex)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증가한 운용 T/T(T/L) 및 수송 가능량을 고려한 추가 수요 확보 방안 및 계획

ex) 기 확보된 추가 수요

(2) 공급 확보 방안(충전사업자 등)

라. 수소 운송장비의 수송용도 사용여부 검증방안

- ex) 실제 수송용 수소 공급에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방안 제시
- ex) GPS 트래커, IoT활용 위치추적 기록 장부 제출
- ex) 출하센터 및 수소충전소 간 운송기록 및 관리장부 제출 등

마.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1)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 자원 규모

- ex) 필수 운영 기간 내 소요 운영비 및 예상 매출액, 손익분기점

(2) 필수 운영 기간 내 적자 발생 가능성 및 보전방안

- ex) 필수 운영 기간 내 적자가 발생하는 수소공급량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
모회사, 계열사 등 관계사 신용 및 자산 규모 등

(3) 중장기 수송용 수소 사업 확대 계획 및 방안

- ex) 중장기 수송용 수소 사업 목표 및 계획
수소 운송 수단의 추가 확보 계획
수송용 수소 사업 지역 확대 계획 등

바.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방안

(1) 수소 수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부 정책 협조

ex) 수급 부족 상황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지시 이행 계획
수급 부족 상황 시, 자체적 수소 유통 기여 방안

(2) 수소 수급 불안정 지역 대상 지원 계획

ex) 수급 수급 불안정 지역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의 지시 이행 계획
수급 부족 불안정 지역에 대한 자체적 불안정 해소 기여 방안

(3)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유통사업 참여 계획

ex) 수소유통전담기관의 공동구매 사업 시 적극 참여하며, 수소거래시장 개설 등 사업 수행 시 협조 및 참여로 수소 유통 활성화 기여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총점
정량 평가 (40)	수행 실적		- 최근 3개년 수송용 수소 공급사업(수소충전소별 수소공급계약) 실적 합계(수소 공동구매 실적제외) - 15건 이상(5점), 12건 이상(4점), 6건 이상(3점), 3건 이상(2점), 1건 이상(1점), 0건(0점)	5	5
	재무구조		- 신청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차등 배점(공모마감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5
	운송료 인하 계획		- 구매지원 사업을 통해 최소 운영기간동안 수송용 수소에 사용되는 운송장비 시장가액(유통전담기관 조사금액)의 50% 이상 인하 (제출자료 기반 평가) - 시장가액 50% 이상부터 환산하여 배점(10~20점,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0	20
	수소 공동구매 참여	'21~'24년 공동구매 참여실적	[생산자·유통사] 수소유통전담기관 주관 공동구매 낙찰건수('21~'24년) - 4건(10점), 3건(8점), 2건(6점), 1회이상 참여(유통)(4점, 미참여(0점)) [충전사업자] 수소유통전담기관 주관 공동구매 참여건수('21~'24년) - 4건(10점), 3건(8점), 2건(6점), 1건(4점), 0건(0점)	10	10
정성 평가 (60)	사업 목적의 정합성	운송장비 세부 사업 추진목적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여부 - 운송장비구매 지원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도, 수소공급을 위한 정부예산 지원 필요 여부	5	5
	사업의 안전성	안전 역량 및 관리계획	- 안전관리자(교육 이수) 등 전문가 보유 수준 - 적정 인수·인도시설 등 필요 시설 보유 여부 - 사업계획서 내 안전관리 계획, 사고 시 대처 방안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적합성 - 운영안전 매뉴얼 보유 여부	5	5
	사업 계획의 합리성	사업 계획의 경제성	- 운송료 인하 계획 및 세부 실행방안의 적절성(향후 5개년) - 생산·운송·공급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공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향후 5개년)	10	30
		사업 계획의 구체성	- 수송용 수소 수요·공급 확보 방안(기 확보 수요·공급 존재 시 우대, 수요: 수소생산자·유통사, 공급: 충전사업자) - 수송용 수소 사용여부 검증 방안(GPS트래커 또는 IoT장치, 운송기록 장부 등 제시방안 검토) - 제출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신뢰성	15	
		사업의 지속가능성	- 운영 필수 기간 내 적자 발생 시 보전 방안 등 사업 추진 중 및 최소운영기간 이후 지속 가능성 - 구매지원 운송장비 기반 중장기 사업 확대 가능성	5	
	수소 유통 활성화	정부사업 대응 노력	- 수소 수급 부족 상황에 대한 정부정책 협조 방안 제시 - 수소 수급 불안정 지역 대상 지원 및 계획 제시 - 수소 공동구매 사업, 수소거래시장 등 적극 참여	20	20
합 계				100	100

□ (기업 신용도 평가기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9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8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83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78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73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공모마감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공공기관 입찰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중소기업 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은 제 6조 제1호에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
- 신청기업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창업초기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은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을 적용하며, 기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창업초기기업)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업체로써 사업자 등록 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로 확인
 - (사회적 약자기업)

구 분	내 용
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복지공장생산기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자립 지원에 관한 훈령(국무총리 훈령)」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 4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복지공장으로 지정된 자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 우대 기준

- 신청사업자가 중소(2점) 또는 중견(1점)기업인 경우 가점 부여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신청사업자가 수소전문기업(2점)인 경우 가점 부여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사본 제출

□ 참여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여 불가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제1조(목적) 한국석유관리원 (이하 “직접보조사업자” 이라 한다)와 OOOO(이하 “간접보조사업자” 이라 한다)간에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공모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협약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직접보조사업자” 는 다음과 같이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간접보조사업자” 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업명 :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수소 운송장비 구매 및 운영
- 사업기간 : 최소 운영기간(60개월) 포함 총 72개월*

* 협약, 구매계약, 제작(인도)까지 12개월 최소 운영기간은 고압가스운반자 등록일로부터 60개월

- 지원대상 : (예시) 기체수소 200bar T/T 00대
- 지원금액 : (예시) 기체수소 200bar T/T 도입가격(VAT 제외)의 50%,
최대 1.15억원/대

* 기체수소 450bar(20ft) T/T 도입가격(VAT 제외)의 50%, 최대 2.1억원/대

* 액화수소 T/L 도입가격(VAT 제외)의 50%, 최대 5.5억원/대

제3조(협조 및 의무)

- ① “직접보조사업자” 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간접보조사업자” 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간접보조사업자” 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 는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취지에 맞게 수송용 수소를 공급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다.
- ③ “간접보조사업자” 는 “직접보조사업자” 가 사용계획이나 협약서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④ “직접보조사업자” 는 “간접보조사업자” 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⑤ “직접보조사업자” 와 “간접보조사업자” 는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

① 직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간접보조사업자가 구매하는 운송장비에 보조금 지원
3.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지원
4. 사업개시 이후부터 최소 운영기간 동안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른 “간접보조사업자”의 사업 실적 관리
5.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경쟁입찰에 근거한 운송장비 구매 입찰·계약
2. 고압가스운반자등록일 기준으로 하여, 60개월간의 최소 운영기간
3. 최소 운영기간 내, 수송용 수소 공급에 한정된 수소 운송장비 활용 및 최소 운영기간 이후에도 수송용 수소 중심 공급
4. 수소수급 부족 상황 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직접보조사업자” 요청에 따른 협조
5. 구매지원 수소 운송장비 운송료에 대해, 최소 운영기간동안 “직접보조사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
6. 운송장비 기반 수소 운송 사업 시, 요구되는 안전 전문가 및 필요 시설 구비,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차량 정기검사 등 시행
7. 운송장비 구매 계약 이후 운송장비에 대한 취득권,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및 최소 운영기간 이후의 처분권
8. 사업 개시 이후부터 최소 운영기간 동안 직접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수소 운송실적관리 등의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9. 운영현황 보고서 제출 시, “직접보조사업자” 요청에 따른 수소 공급
· 구매 계약서 제출
10. 그밖에 “직접보조사업자”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등)

- ① “직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운송장비 구매 지원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며,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직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소 운송장비 구매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③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운송장비 구매 대수 및 보조금 금액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직접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직접보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보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6조(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 “간접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기간 종료 후 제출 및 보고의무)

- ①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직접보조사업자”에 해당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최소 운영기간이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를 “직접보조사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직접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 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소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중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간접보조사업자”는 “직접보조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 ② “직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운영현황 보고서,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 시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간접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3.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4.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직접보조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반환)

- ① “간접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직접보조사업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기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간접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8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기 지급한 보조금을 “직접보조사업자”에 반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타 보조사업을 통해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직접보조사업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타 보조사업에서 지원받은 금액만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0조(지도·감독)

- ① “직접보조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간접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 ② “직접보조사업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접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민·형사상의 책임)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직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 “직접보조사업자” > 한국석유관리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1207

대 표 자 : ①인

< “간접보조사업자” > ○○○○

주 소 :

대 표 자 : ①인

[붙임5]

「수소 운송장비 구매 지원 사업」 구매 계획서

구 분		차량 1호	차량 2호	차량 3호	차량 4호	차량 5호
계약번호						
제작업체 및 모델						
낙찰일						
계약일 (선금지급일)						
인도일 (잔금지급일)						
구매 금액	총 구매 금액					
	보조 금액					
	자부담 구매 금액					
선금	총 선금					
	보조 금액					
	자부담 금액					
잔금	총 잔금					
	보조 금액					
	자부담 금액					

- 1) 운송장비별 선금/총 구매금액 증빙 자료 필요 ex) 영수증, 계약서 등
- 2) 해당 구매 계획서는 사업자가 확약한 운송장비에 대한 모든 입찰 및 계약 진행 후, 선금이
확정되었을 경우 제출

[붙임6]

「수소 운송장비 구매지원 공모사업」 분기 운영현황 보고

□ 분기별 수소 운송 실적

계약 대상	공 급 일	지 역	수소 공급단가(원/kg)				운송량 (공급량/구매량)	
			생 산 비 (A)	운 송 비 (B)	T/T(T/L) 비 용(C)	공 급 단 가 (D=A+B+C)	계 약 운 송 량	실 제 운 송 량
			평 균 원/kg	평 균 원/kg	평 균 원/kg	평 균 원/kg	총 kg	총 kg

※ 대상별 수소 계약 관련 증빙 제출 필요 ex) 계약서, 공급 협약서 등

□ 수소 운송장비 안전 관리 현황

구 분	과거 실적	현재 실적			계획
	최종 시행일	금회 해당 여부	금회시행 여부 및 일자 (미시행 시, 사유)	세부 시행 사항	시행 예정일
운송장비 재검사				ex) 세부 검사 항목	
차량 정기검사				ex) 세부 검사 항목	
운전자 안전교육				ex) 세부 교육 항목	
운송사업자배상 책임보험 가입				-	

※ 증빙 자료 첨부 필요 ex) 검사필증, 교육이수증 등

□ 수소 운송장비 운행 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안전 사고	금회 발생 여부	
	발생 일시	
	발생 경위	
손해 배상	방식	☐ 책임보험 ☐ 공탁금 ☐ 기타
	배상 수준	
	배상 내용	

※ 분기 내 무사고 시, 보험사 통한 무사고 확인증 제출 필요

